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23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성○○, 이○○

피 고 1. ○○시장

2. ○○시 ○○구청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 ○○시장이 2022. 9.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22,9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7,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시 ○○구청장이 2022. 9.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22,941,4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7,460,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7.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경제자유구역 C지구 복합관광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대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2. 26.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대출금 140,000,000,000원, 차주 이 사건 법인, 대주 원고, 연대보증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대리금융기관 E 주식회사로 정하여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6. D, F 주식회사(이하 'D 등'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 원고 및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약정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등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 2,163,500주¹⁾(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26.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20. 3. 13. D과 사이에 '담보권자는 대주로서의 권리나 이 사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1) = D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 2,013,988주 + F 주식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 149,512주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에 대한 특별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바. 피고들은 2022. 3. 15.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20. 2. 26.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3,330,000주 중 2,163,500주 (64.57%)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시장은 2022.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한 차량운반구에 관한 취득세 1,022,9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7,46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시 ○구청장은 2022.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한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22,941,4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7,460,61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2. 11. 24.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목적으로만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D 등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대출 및 그 대출채권과 그에 수반하는 권리에 대한 관리, 운용 및 처분, 사채(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2020. 1. 7. 대표자 사내이사 G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즉, 원고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다시 이 사건 법인에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서류상 회사로 이 사건 법인으로 부터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받는 것만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서에 따르면, 배당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인 D 등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였고(제3조 제6항), 담보권 실행 시 양도담보권자(원고)는 담보물 가치 내에서 확정된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고 나머지 잔여금은 D 등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4조 제2항),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양도담보권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지되고, 양도담보권자(원고)는 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는바(제10조), 이 사건 주식에 관련된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D 등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는 대주로서의 권리나 이 사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회사의 도산(기업회생, 파산 등) 절차, 청산, 사업권의 양수도 관련 사항, 대주의 대출약정서상 채권의 보전 및 확보 관련 사항, 대주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시 사업협약상 확정투자비의 지급과



관련한 절차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제외하고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였고(제1조), 원고는 대주로서 채권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D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제2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였는바(제4조), 원고와 D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지만, 담보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주식양도담보권은 이 사건 대출약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주식은 지체 없이 본래 주주인 D 등에게 반환되었으며, 이후 새로운 대주인 H 주식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

마)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변함없이 D의 대표이사인 I이었고, 그 밖에 J, K이 사내이사로, L이 감사로 재직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바) D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D의 재무제표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²⁾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였는바(갑 제13호증), 이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실적이 D의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D은 자신의 경영성과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서의 의결권 조항(제3조)에 따라 원고가 이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투자주식에 대해 출자회사(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반영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사건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서의 의결권 조항과 상관없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서의 의결권 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조항에 불과하다. 또한 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권리 중 담보목적 범위 이외의 권리는 여전히 D 등에게 있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서의 의결권 조항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을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광○○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판사 백○○

판사 강○○



별지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23. 12. 29. 법률 제198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